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2.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년 3~5월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금액 적용)이 '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0,702	29,273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 2019.12월 보건복지부

◆ 신청인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
 -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 ③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 ※ '사업' 공고일 이전 청년수당,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 업로드)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발급: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일)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자영업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코로나19 실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
- 코로나19 실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 추가 선정

5.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0. 8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송부 예정

6.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등 참여 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매월 이전달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급여 청구

7. 이의신청

-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
 - 서울시에서 사업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란에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신청 제외 대상으로 결정·통보한('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급여청구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온라인상담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Q&A, FAQ, 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 - 2133 - 1337~1339), △ 다산콜센터(☎120), △ 주택정책과(☎02 - 2133-7702~7706)